

# 연구윤리 규정

## 제1장 총칙

제1조(규정) 본 규정은 일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, 학술대회발표문,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두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일본의 역사, 문화, 사회를 연구하여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기능) 학술지 『일본학』과 연구소 발간 출판물에 두고 및 수록된 논문,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,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## 제2장 조직

### 제4조(구성)

- 1) 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학술지, 학술대회발표문,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두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.
- 2)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.
- 3)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윤리위원이 되며,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4)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.

### 제5조(임기)

- 1)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.
- 2) 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.

## 제3장 운영

제6조(대상)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.변조와 표절, 중복 게재 등의 행위이다.

제7조(범위)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.

- 1)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, 용어,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.
- 2)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, 용어,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.
- 3)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,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.

- 4)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.
- 5)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.

제8조(회의)

- 1)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,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.
- 2)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.
- 3) 피제보자와 동일 기고나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.

제9조(보호)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.

- 1)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,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, 향후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2)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## 제4장 심사와 집행

제10조(심사의 절차)

- 1)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해야 한다.
- 2)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.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- 3) 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,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4)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한다.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,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기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5)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,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- 6)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, 아래 제 11조의 학술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장에 즉시 통보하며 소장은 즉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학술 활동 제한의 종류)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제한한다.

- 1) 해당지의 논문 투고 접수 거부(5년 이상. 기한은 윤리위에서 결정함)
- 2)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.
- 3) 연구소 홈페이지와 『日本學』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공시.

4) 해당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

제5장 기타

제12조(기타)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.

부 칙

1.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<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>(교육부훈령 제263호, 2018.7.17.시행)에 따른다.